

영등포구의회  
제197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6. 10. 25.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民 基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 1. 경 과

의안 제161호로 2016년 10월 10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0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민·관·학 교육지원 협력체계를 통해 지역 교육발전을 도모하고 아동과 청소년이 행복하게 성장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교육지원기본계획 수립·시행 (안 제4조)
- 나. 교육보조금의 지원 (안 제5조)
- 다. 교육협력지원운영협의회 설치 (안 제7조)
- 라. 교육협력관 운영 (안 제15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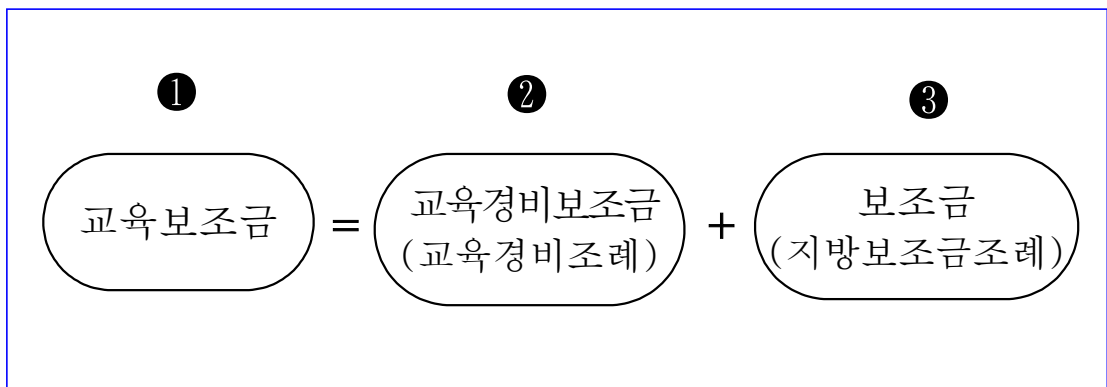
## 4. 참고사항

- 가.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 나. 예산조치: 필요 없음

##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공교육 혁신을 위한 사업, 지역과 연계된 학교교육 사업 등에 소요되는 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의 영등포구 교육발전협의회를 대체하고 기능을 보강하여 영등포구 교육협력지원운영협의회를 설치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고, 조례 개정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등 일반적인 사항을 정함.  
(안 제1조~제3조)
- 또한, 교육지원기본계획 수립·시행, 교육보조금 지원, 교육보조금 평가·관리 규정을 두고 있으며, (안 제4조~제6조) 교육협력지원운영협의회 설치·기능, 운영협의회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의 직무 등 운영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안 제7조~제15조) 본문 15조와 부칙 3조로 구성됨.
-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2016 영등포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지역사회 민·관·학 교육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아동과 청소년에게 기본적인 교육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으로써 주민복지를 위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해 보임.

- 다만, 안 제2조,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교육보조금의 지원 규정은 다른 조례와 충돌하거나 권한을 침해 하는 등 법체계를 훼손하고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교육보조금”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이하 “교육경비조례”라 한다)에 따른 교육경비보조금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지방보조금 조례”라 한다)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정의하고,



-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공교육 혁신을 위한 지원 사업 등 4개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원대상자<sup>1)</sup>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①교육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다른 조례(교육경비조례, 지방보조금조례)에서 각각 명시하고 있는 ②교육경비보조금 및 ③보조금 지원 대상을 본 조례안에서도 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됨.

1) 유치원·각 급 학교의 장과 교육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사업자

② 교육경비 보조금은 「교육경비 조례」 제2조에 따라 급식 시설·설비사업 등 8개 사업을 지원 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③ 보조금은 「지방보조금 조례」 제4조 및 제15조에 따라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 등 5개 사업과 그 밖의 공모사업을 지원 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이 “교육보조금”의 지원대상은 각각의 해당 개별 조례인 「교육경비 조례」와 「지방보조금 조례」에서 규정할 사항이므로 본 조례안에서 “교육보조금” 지원 규정을 두는 것은 다른 조례의 권한을 침해하고 나아가 법체계의 혼란을 초래하여 주민의 법 이해를 어렵게 하는 등 부적합한 사례임.
- 따라서, 당초 조례 개정의 취지가 공교육 혁신을 위한 지원 사업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려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자체적인 보조금 지원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교육경비 조례」와 「지방보조금 조례」에 근거한 “교육보조금”의 용어와 내용을 정비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함.

(※ 수정의견 따로붙임)

〈수정 의견〉

- 안 제2조는 삭제한다.
- 안 제3조부터 제15조까지를 안 제2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한다.
- 안 제3조 중 “구”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하 ‘구’라 한다)”로 한다.
- 안 제4조제2항 중 “교육보조금”을 “보조금”으로 한다.
- 안 제5조제1항 중 “지원대상자”를 “유치원·각 급 학교의 장과 교육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의 제목, 같은 조제1항 및 같은 조제2항 중 “교육보조금”을 각각 “보조금”으로 한다.
- 안 제6조의 제목중 “교육보조금”을 “보조금”으로 한다.

# 참 고 자 료

##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 정보화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 및 환경 개선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과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7.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사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서울특별시 보조재원에 따른 것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경우
4.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제1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의2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연도마다 해당연도의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구보나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3 지방재정법

####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